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| | |
|---|---------|
| 선 | 기 관 의 장 |
| 람 | |



제 622호 2010. 2. 22. (월)

공 고

- 공고 제2010-135호 [보육시설 인가제한 공고] 2

【 안 내 문 】

-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
 ⇒ 구 홈페이지(<http://www.bukgu.ulsan.kr>) → 행정정보 → 일rip마당 → 북구공보에서 열람

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람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문화홍보과 (☎ 219-7207 행정 7207)

보육시설 인가제한 공고

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보육시설 인가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인가제한 내역

- 신규설치시설 반경 **1km**내 기존 보육시설 이용율 **70%이하**일 경우 제한
- 신규 인가신청시 보육아동 확보(모집)계획서 첨부
- 법정 의무시설(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상시 2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) 및 국·공립 시설(장애전담시설 포함) 제외

2. 시행기간 : 2010. 3. 1 ~ 별도 수급계획 수립시

3. 시행범위 : 울산광역시 북구 전역

4. 기타 고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(☎052-219-734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0. 2. 22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